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 목 차 =

제안요청서

2023. 04.

국 토 교 통 부
첨 단 물 류 과

I. 연구용역 개요	1
II.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I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3
IV. 제안서 제출 및 작성	4
V. 연구용역 수행업체선정 방법	5
VI.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8
VII. 과업수행지침	9
VIII. 성과품 작성 및 제출목록	12
IX. 보안대책	13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7)

I. 연구용역 개요

- 1. 과업명** :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필수 서비스인 생활물류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는 미흡한 상황
 - 생활물류 업역에 전통 물류시설과 새로운 형태의 물류시설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활물류시설과 기존 물류시설과의 제도적 구분이 불명확
 - 국토계획법에서는 창고시설을 공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입지를 관리하며, 건축법에서는 창고(물류)시설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
 - 전통적인 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 기존의 물류시설 체계하에서 생활물류시설의 도심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건축물 용도 측면에서도 생활물류시설이 물류시설과 동일시 되면서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확보도 어려움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활물류 인프라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시설 개념을 구분하여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함
- 4. 사업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II. 주요 과업내용

- ① 생활물류시설 운영 실태 조사 및 생활물류시설의 구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다크스토어 등 유통·물류업계의 생활물류시설 운영 사례 조사
 - 도심 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물류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 조업 공간 등을 파악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유형화
 - 도심 내 상업·업무지역,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앞 도로에 조업공간(상하차 공간) 조성 현황 등 실태조사
- ② 생활물류시설 관련 제도 분석**
 - 건축법, 물류시설법, 창고시설 등에 관한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물류시설과 전통적인 물류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도적 고찰
 - 국토계획법 및 주요 사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허가기준 등 관련 규정 분석
 - 생활물류 인프라 및 관련 제도 해외사례 조사
- ③ 생활물류시설 관련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생활물류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에 맞는 생활물류시설 제도화 방향 검토
 - 생활물류시설을 구분하여 국토계획법, 건축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관련 법령 개정방안 도출 및 정책 제안
 - 현재의 생활물류시설을 기존 제도하에서의 구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구분 체계 등 마련
 - * 노상 조업특별구역 등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사항 포함

- 도로 부속물로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업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단계에서 화물차 조업공간이 도로부속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I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명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

- 5 -

-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라.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가.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나.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야 함
-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협의하여 처리함

V.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 7 -

IV.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 제출

다. 제안요청서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3, 4008)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 가. 과업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제안 개요 (배경, 목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계획 (과업 세부내용, 수행방법, 세부추진계획 등)
 - 추진일정 등
- 나.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한컴 한글 문서로 작성하며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 6 -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8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배점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 방법) ○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가	25
2	사업수행 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5
3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25
4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25
계			100

2)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구 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기술·지식능력	25	20	15	10	5
사업수행계획	25	20	15	10	5
지원기술·사후관리	25	20	15	10	5
기타	25	20	15	10	5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제,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VI. 과업 수행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 생활물류시설 운영 실태 및 생활물류시설 구분							
2. 생활물류시설 관련 법제도 분석							
3. 개선과제 도출							
4. 제도 정비 방안 도출							
주요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V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10 -

-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4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나.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후 사업정산서 외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CD 및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10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착수 후 4개월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전	준공예정 15일전	FILE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준공일	50부	최종보고서
CD-ROM	준공일	1개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서(자문회의결과 포함)는 별도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VIII. 보안대책

1.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의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등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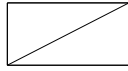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납품 수량 외 추가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처에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제안서

용역명 :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0년	2021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청렴계약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월			
본·용역 참여업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요 경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1. 【서식 7】의 본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차: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안서약서

과업제안서 편철 순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2. 내용

본인(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계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확인자 : 대표이사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1. 과업제안서 표지(서식1 활용)
2. 제안서 내용(A4용지로, 한컴오피스 “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2 활용)
4.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서식3 활용)
5. 연구진 이력사항(서식4 활용)
6.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